출 판 권 설 정 계 약 서

저작권자의 표시

대표저자 : 박재용

소속(업체 및 기타): LG 이노텍

저작물의 표시

도서 제목 : 이것이 우리에게 딱 맞는 딥러닝과 텐서플로우

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, 저작권자 **박재용**을(를) **갑**이라 하고 출판권자 **비제이퍼블릭**을 **을**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.

제 1 조(출판권 및 전송권의 설정)

- ①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(이하 '본 저작물'이라 줄임)의 출판권(인터넷 온라인 또는 PC통신상의 게시, 컴퓨터 파일 형태를 통한 전송 혹은 배포, 전자책등 전자출판의 발간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, 기타 저작권법 제 2 조 제 9 호의 2 에서 규정한 '전송'을 포함한다)을 설정하고,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 복제, 배포 및 전송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.
-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, 배포, 전송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.

제 2 조(출판권의 등록)

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, 갑은 이에 지체 없이 협력해야 한다. 제 3 조(배탁적 이용)

본 저작물(저서)의 제호 및 내용을 사용하여 저작권에 위배되는 저작물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.

제 4 조(출판권의 존속기간)

- ①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발행일까지 및 초판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.
- ② 제 19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5 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 5 조(원고 등의 인도)

- ①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2018년 04월 20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(이하 '완전원고'라 줄임)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② 갑이 본 계약서를 작성 후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없이 계약일까지 완전원고를 을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. 이때 선지급된 계약금이 있다면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)

- ①본 저작물의 내용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- ②본 저작물의 작성 중에 불가피하게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는 경우(인용에 해당)는 출판 저작권에 명시 된 공정한 관행과 출처 명시 그리고 올바른 인용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야하며 이 내용이 을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7조(저작물의 수준에 대한 사항)

- ① 갑이 임의대로 원고 인도일을 넘기거나 무성의한 작업으로 인해 출판이 곤란한 경우 을은 본 저작물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, 을은 갑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을의 요구가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부당한 요구일 경우에는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
- ② 갑은 해당 도서의 출간 이전까지 본 저작물의 교정 및 원고 보완에 대한 을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지 못해 제 3 자로 하여금 추가작업을 요청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갑은 을이 요청할 경우나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, 시사적 내용, 통계 숫자의 변경 등으로 인한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본 저작물의 수정 및 보완에 응할 의무가 있다.

제 8 조(저작자 인격권의 존중)

을이 본 저작물의 제호, 내용, 판별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9 조(비용 부담)

- ①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제작, 홍보,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.
- ②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,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 12 조에 의한 조건의 변경을 의무적으로 행한다.

제 10조(저작권 표시 등)

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갑의 이름과 발행연월일 등 저작권 표시를 하고, 홍보를 목적으로 갑의 성명, 사진, 경력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 11 조(발행부수, 장정, 정가 등)

본 저작물의 복제물의 체제, 장정, 정가, 발행 부수, 증쇄의 시기 및 홍보, 광고, 판매의 방법 등은 을이 결정한다. 다만 내용의 수정,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2 조(집필 비용 청구 및 지급)

- ① 본 저작물의 원고료는 도서의 정가 대비 판매부수에 대한 2,000부 이하는 10%, 2,000부 이상은 12% 인세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, 선인세로 1,000,000원을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
- ② 을은 계약서 작성 시점에 원고료의 1 차 선인세 500,000 원을 갑에게 선지급하고, 전체 초고가 완성되는 시점에 2 차 선인세 500,000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. 그러나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선인세를 전액 반납하도록 한다.
- ③ 을은 연간 1회(매년 1월) 판매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해당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.

제 12 조의 1(전자책 사용 허락과 사용료)

본 저작물을 전자책(eBook)의 형태로 발간할 경우 갑은 그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에게 전자책(eBook)의 정가 대비 판매부수에 대한 10% 인세를 지급한다.

제 13 조(갑에 대한 증정본 등)

- ① 을은 본 저작물의 초판 발행 시 갑에게 10부를 기증하기로 한다.
- ② 갑이 전항의 부수를 초과하여 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책값의 <u>70</u>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개정판, 증보판)

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15조(2 차적 사용)

본 계약 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, 개작, 연극, 만화, 영화, 방송, 녹음, 녹화, CD 형태 등 2 차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.

제 16조(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)

본 계약 기간 중에 갑이 본 저작물을 자신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, 출판할 수 없다.

제 17조(저작권, 출판권의 양도 등)

- 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을은 위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18조(원고 반환)

갑과 을 사이에 추가 약정이 없는 한 본 저작물의 출판 후 을은 원고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제 19조(계약 내용의 변경)

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20 조(계약의 갱신)

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(우편 발송시 등기우편) 통고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일의 도래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할 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씩 자동연장된다.

제 21 조(계약의 해지)

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1 주일(1 개월)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갑이 본 계약 이후 3 개월 이상 경과 후 집필을 포기하게 되면 갑은 을로부터 지급된 계약금.

선인세를 을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해지된다. 제 22 조(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)

-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있다.
- ② 전 항의 경우, 제 12 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재해, 사고)

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 경우, 상호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.

제 24 조(계약의 해석 및 보완)

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,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.

제 25 조(소송의 합의 관할)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.
-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, 을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7년 12월 19일

(추가사항)

원고를 3회에 걸쳐 탈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 날짜

도서의 1/3 분량 : 2017년 02월 20일까지

도서의 2/3 분량: 2018년 03월 20일까지

도서의 3/3 분량 : 2018년 04월 20일까지

저작권자의 표시(갑)

주 소 :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03 번지 14,

106 동 409 호 (광복현대아파트, 철산동)

전화번호 : 010-6762-6090 휴 대 폰 : 010-6762-6090 전자우편 : jaeyong1@naver.com

계좌번호 : 453-20-084596 SC 제일은행

주민번호 : 831216 - 1904411

성 명: 박 재 용 (인)

출판권자의 표시(을)

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

삼송테크노밸리 B동 229호

출판사명 : 비제이퍼블릭 전화번호 : 02-739-0739 팩스번호 : 02-6442-0739

대표성명: 서 현 (인)